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4.1.] [대통령령 제28722호, 2018.3.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하여 재활용하는 시설 설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정기검사 등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腐熟)시설의 범위(별표 3 제3호)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 중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신고, 정기검사 등의 의무를 면제함.

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8 제2호버금 및 어목 신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및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④대통령령 제2872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 본문 중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을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자기 조각"을 "석탄재"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 중 "10마력"을 "7.5kW"로 하며, 같은 목 2) 중 "20마력"을 "15kW"로 하며, 같은 목 3) 및 4) 중 "10마력"을 각각 "7.5kW"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10마력"을 "7.5kW"로 하며, 같은 목 2) 중 "20마력"을 "15kW"로 하며, 같은 목 3) 및 4) 중 "10마력"을 각각 "7.5kW"로 하며, 같은 호 다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숙(腐熟)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3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목 3)다)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	---------------	-----	-----	-------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무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부터 처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6	500	700	1,000
서.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2	100	200	300
머.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7	500	700	1,000
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3	100	200	300
처.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 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4	100	200	3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부터 쳐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